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17
----------	-------

발의연월일 : 2026. 3. 27.

발 의 자 : 장철민 · 황정아 · 채현일
김태선 · 박용갑 · 김한규
허영 · 김교홍 · 안호영
문금주 · 정준호 · 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인건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지원의 유효기간)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약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중 제약기업이 부담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인건비 등 지원) ① 국가는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u> <u>1.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부담금</u> <u>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u> <u>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u> <u>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약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u>

	<u>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u> <u>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u> <u>다.</u>
--	---